

안산시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
의안 번호	2951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7.02.3a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현행 조례의 위임법령의 근거인 「농어촌정비법」의 용어일치 및 개정사항 반영하여 조례 제명 및 조문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제명을 「안산시 농어촌용수구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
- 나.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 및 인용조문 개정

조례개정안 : 붙임 1

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 3

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 2

- 『농어촌정비법』 제15조
- 『농어촌정비법 시행령』 제23조 및 제24조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기간 : 2016. 12. 19. ~ 2017. 1. 8.(20일간)

기타 참고사항

- 현행 조례 : 붙임 4
- 방침결정문 : 붙임 5

【붙임 1】

**안산시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 조례안**

안산시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안산시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”를 “안산시 농어촌 용수구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농어촌정비법 제1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5”를 “농어촌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”로, “농촌”을 “농어촌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“농촌”을 각각 “농어촌”으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 중 “농촌”을 “농어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농촌”을 각각 “농어촌”으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“농촌”을 각각 “농어촌”으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농촌”을 각각 “농어촌”으로 한다.

제6조부터 제15조까지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과		생명산업과
입 안 자	실과장 직위성명	생명산업과 이진교
	담당·팀장 직위성명	농정계장 김기석
	담당자 성명·전화	김세형 (행정 2316)

현행	개정안
<p>제5조(농촌용수시설) ①시장은 농촌용수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2. (생략) ② (생략) 	<p>제5조(농어촌용수시설) ①-- 농어촌용수시설</p> <p>-----</p> <p>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2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<p>제6조 (농촌용수구역관리위원회의 설치) ①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하여 안산시농촌용수구역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</p> <p>②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농촌용수의 이용에 관한 사항 2.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에 관한 사항 3. 농촌용수의 공급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 제한에 관한 사항 4. 농촌용수의 신규 공급에 관한 사항 5. 기타 농촌용수구역의 운영·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	<p><삭제></p>
<p>제6조의2 (위원회의 존속기한)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.</p>	<p><삭제></p>
<p>제7조 (위원회 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촌용수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농촌용수 관련 업무담당 과장, 농촌용수 구역 관할 동장 2. 관할 저수지의 수리계장 또는 임원 3.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임직원 4. 농촌용수 및 지표수(지하수)와 관련하여 경험과 학식이 있는 자 <p>④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다. 이 경우 간사는 농촌용수 업무담당 주사가 되고, 서기는 농촌용수 업무담당 실무자가 된다.</p>	<p><삭제></p>

현행	개정안
제8조 ~ 제11조(생략)	<u><삭제></u>
제12조(심의사항의 준수) 농촌용수구역과 관련된 주민, 이해관계인 및 기관(단체)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	<u><삭제></u>
제13조 ~ 제14조(생략)	<u><삭제></u>
제15조(사용제한)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촌용수의 사용을(일시)정지하거나 (일부)제한할 수 있다. ②시장은 전항에 의하여 농촌용수의 사용을 제한(정지)할 경우에는 그 사유기간구역,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 또는 해지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.	<u><삭제></u>
제16조(생략)	제16조(현행과 같음)